

3. 2013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

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[감사원지적사항 반영]

○ 포괄사업(재량)비의 세출예산편성 금지

-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없이 사전에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일정액씩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

※ '11년 감사원 재정건전성 감사 시 지적 ('11. 12. 21)

- 구체적 사업예산 중심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

○ 법정 의무적 경비 세출예산 우선 편성 명문화

- 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·필수 경비는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규정

□ 예산편성 기준경비 개선 및 운영 효율화

○ 세종특별자치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 신설

- 기관의 규모·업무량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역에 적용되는 3단계 기준 적용시 세종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폭 증가
- '12년의 경우, 출범 첫해이고 6개월분임을 감안하여 임시로 3단계의 기타 시·도 분류로 적용

○ 농업기술센터 소장(5급)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근거 마련

-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"5급 또는 농촌·생활지도관"인 지역 중, 소장 밑에 과장·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반영 필요

○ 자치경찰단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형평성 제고

-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특수성과 소방서장과의 형평을 감안하여,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연간 기준액을 소방서장과 동일하게 적용

○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방식 개선

- 기준액 산정방식의 사업예산 연동액을 현행 사업예산 구조에 맞도록 “정책사업 결산연동액”으로 변경
- 출범 1차년도인의 세종특별자치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‘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별도 설정 통보

□ **세입·세출 예산편성 과목 구분과 설정 개선 등**

○ 세입예산 과목 구분 설정 개선 (이월금, 예탁금)

- “이월금”을 “전년도 이월금”으로 과목 명칭 명확화
- “예탁금 상환금”을 “예탁금원금회수 수입”으로 변경

○ 세출예산 과목 구분 설정 개선 (전산개발비, 시설비 등)

- 전산개발비(207-02)에 대한 감리비 편성 근거 마련
- 안전진단과 정밀점검 등의 용역비는 시설물의 개선, 보수 등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므로 시설비(401-01)로 편성하도록 과목설정에 명시
-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(802-02)에 “이자 반납금” 근거 마련

○ 예산안 첨부서류 추가 (성인지 예산서)

- 예산안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서 포함

□ **새로운 예산제도의 도입**

○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본격 시행

- ‘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(性認知) 예산·결산서를 작성하고, 이를 예산·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 예정

○ 성과예산제 시범 편성 및 법제화 추진

- ‘14년부터 “성과예산제” 전면적·의무적 적용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계획